

농림축산식품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미 실시

기 관 명 강서구

훈계대상자 ① 강서구 ○○○과 지방○○○○○ ○○○

② 강서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9. 14.부터 2016. 8. 2.까지, 지방○○○○○ ○○○은 2016. 8. 3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강서구 ○○과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 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2015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지원조건	사업예산(단위 : 천원)				주요사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 비 20% 지방비 30% 융자담 50%	1,428,000	300,000	414,000	714,000	- 다검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 시설 지열, 목재 펠릿 난방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5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농식품부)」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변경 신청 내용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농식품부까지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서구에서는 농업인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할 경우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강서구에서는 농업인의 사업계획변경 요청 사항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의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사업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농업인) 10명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선람 과정만 거친 후 구청장의 변경 승인절차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에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의 행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